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277
----------	-------------

제안연월일 : 2017년 11월 3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규정 삭제 및 적용례 규정 신설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촉 후 재위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
- 추가적인 예외 조항 삭제(안 제8조제3항제4호).
-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 괄호 중 “이를 연임으로 본다” 를 “다시 위촉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법령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의 특정분야 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u>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u>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